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후보자 민감정보 심사 및 비공개 열람 도입>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50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기 · 이기현 · 박상혁 · 문진석 · 김문수 · 허 영
박용갑 · 이상식 · 김동아 · 이성윤 · 윤종균 · 백승아
김준혁 · 전진숙 · 최혁진 · 박홍배 · 민형배 의원(17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 의안번호 : 125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

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는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인사청문 소위원회)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심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의2(비공개 자료) ①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경우 위원은 열람만 가능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사유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인사청문회가 개인신상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여,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의 민감정보를 심사하는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인사청문과 관련된 법정 기한¹⁾을 감안할 때 최장 2주 이내에 민감정보 심사, 비공개 여부 분류 및 자료 열람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와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심사·분류 대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활한 제도 운영에 제약이 있어 보이는 점, 비공개 자료 유출시 징계 외에 어떤 침익적 조치가 가능한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1)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위원의 비공개 자료 외부 유출에 대한 징계 근거는 「국회법」 제155조²⁾에서 직접 규정하고,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후보자’는 현행법상 용어에 맞추어 ‘위원회’와 ‘공직후보자’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료의 비공개열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1673호 및 제11408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2)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16. (생략)